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795호 2010. 9. 7(화)

- 시장지시사항..... 2
- ◀ 규 칙 ▶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533호) ..... 5
-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0-74호) ..... 10
-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제2010-75호) ..... 12
- ◀ 공 고 ▶
-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직권폐차)공고(제2010-822호) ..... 26

회 람									
--------	--	--	--	--	--	--	--	--	--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10. 9. 6(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9.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석 전·후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것.</li>   <li>○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도의원과의 적극적인 공조활동 전개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li> </ul> </li>   <li>○ ‘2010 백남준 특별전’ 준비 및 홍보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준비로 관람객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li> <li>- 많은 사람들이 특별전 관람과 포항관광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li> </ul> </li>   <li>○ 의회 시정질문 답변서 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별 시정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li> <li>- 성의 있고, 논리적인 답변을 통해 시정홍보의 기회가 되도록 할 것.</li> </ul> </li>   <li>○ 금년도 사업 마무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별로 전체 사업계획을 점검하여 남은 사업, 추경 사업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하기 바람.</li> </ul> </li> </ul>	<p>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전 부 서</p> <p>기획예산과 (전 부 서)</p> <p>시립미술관</p> <p>전 부 서</p> <p>전 부 서</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9. 6)</p>	<p>○ 시가지, 행락지, 다중집합장소 등의 시설물(화장실 등)을 1차 읍면동, 2차 해당부서에서 점검·관리하여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p> <p>○ 경주 ‘한류드림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치. - 9. 10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개최되는 ‘한류드림페스티벌’에 참석하는 일본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초청 및 홍보 추진하기 바람.</p> <p>○ 추석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출향인사 대상 고향 상품 애용 운동(시장님 서한문, 전단지 발송 등) 전개하기 바람.</p> <p>○ 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정비 철저히 할 것.</p>	<p>읍 면 동 전 부 서</p> <p>국제협력팀 관광진흥과</p> <p>경제노동과 농축산과 수산진흥과</p> <p>수산진흥과 남·북구청</p>
<p>지 시 110-040</p> <p>지 시 110-041</p>	<p>○ 태풍대비 현장점검 철저. - 9호 태풍 ‘말로’가 한반도를 통과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전직원은 재난대비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농업 시설, 침수지역 등 피해예상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태풍 피해 최소화 되도록 할 것.</p> <p>○ 공직자 '스마트워크(Smart Work)' 실행방안 마련. - 직원교육을 통해 스마트워크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갖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라며, - 6급 이상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보급, 결재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워크 실행방안 마련하기 바람.</p>	<p>재난안전과 (전 부 서)</p> <p>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지 시 110-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시책이 많이 나올 있도록 2011년 시책발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li> <li>- 우리시의 시책이 전국 타지자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전국 최고, 최초, 이슈화 등) 발굴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li> </ul>	기획예산과 (전 부 서)
지 시 110-0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지시사항 명확히 문서화·부서지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추진상황 점검 철저히 하기 바람.</li> </ul>	자치행정과 (전 부 서)
지 시 110-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수시로 직원 전화 친절도를 점검하여 친절도 제고하기 바람.</li> </ul>	감사담당관실 (새마을평생 학 습 과)
지 시 110-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20인이상)민원, 고질민원 해소 대책 강구.</li> <li>- 집단·고질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민원사안별로 철저히 분석·관리하고,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여 설득에 적극 힘쓰기 바라며,</li> <li>- 해당 국·과장 및 관련 읍면동장 대책회의를 거쳐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 부시장께 보고바람.</li> </ul>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지 시 110-0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란성 전단지 단속 강화.</li> <li>-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란성 전단지 배포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 선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li> <li>-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추적단속을 통해 음란성 광고물 배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li> </ul>	남·북구청
지 시 110-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시재활작업장에서 제작·생산되는 인쇄물, 현수막, 쓰레기 봉투 적극 구매하여 장애인 자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할 것.</li> </ul>	주민복지과 (전 부 서)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지 시 110-048	○ 농축산과, 수산진흥과에 자체 유통T/F팀을 구성하여 우리시 농축수산물 판매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필요시 차량 지원)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지 시 110-049	○ 테라노바팀에 자문하여 중앙 아트홀 외관 정비하기 바람.	시 설 과 (문화예술과) (테라노바팀)

## 규 칙

포항시 규칙 제 533호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9월 7일

##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별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 장 명	영업시간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04:00 ~ 22:00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경매시작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고추, 마, 우영, 연근, 갓, 취나물, 산나물, 다래, 고사리, 두릅, 고들빼기, 죽순, 무말랭이,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호박고지, 박고지
2. 단무지, 절임류, 무침류, 묵류, 두부, 메주 등 농어업인이 단순 가공한 농산물로 물량이 적은 품목
3.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패류, 해조류 중 반입물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품목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제4조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① 조례 제69조에 따라 품목별 경매 시간 및 경매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시적으로 출하물량 증가로 경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조례 제87조에 따라 도매시장 내에서 경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거래참가증을 패용하고 별표 2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도매시장별·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 법인”이라 한다)별·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매업무의 대행)** 조례 제121조에 따른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업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조례 제91조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부류의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 시장이 판단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적격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없을 경우,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제7조(장비의 확보)** ① 조례 제113조에 따라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경매기 및 전산처리(컴퓨터)장비, 전자식 계량기
2. 수송차량 및 하역장비
3. 방송시설, 메가폰, 청소 및 방역장비
4.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구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쾌적한 환경 및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비 및 용구

**제8조(별점제도)** ① 조례 제119조에 의한 별점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별점(점)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1회 위반	0.5
	2회 위반	1
	3회 위반	2
그 밖에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0.2
	2회 위반	0.5
	3회 위반	1

② 제1항의 벌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벌점(점)
주의		3
경고		5
업무정지	10일	10
	15일	15
	30일 이상	30

③ 벌점 적용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누적점수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품 목		경매시간	경매장소
청과부류	과실류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경매장
	채소류 및 기타 작물류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수산부류	수산품목 전부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 내 경매장
그 밖의 품목	단순가공 농산품 등	04: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별표 2]

거래관계자의 복장

거래관계자	표시구분	바탕색	표시글자
경매사	모자	군청색	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 라 표시
중도매인	모자	주된 경매 참가 도매법인별 표시	앞면에 중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	모자		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시장별로 별도 정함

1. 개정이유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조례 제1002호 2010.5.7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수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을 조정 (안 제2조)
- 경매참가인의 복장규정을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별, 부류별로 구분이 가능한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 기준 마련(안 제8조)
-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등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0 - 74호

포항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시 북구 흥해읍 대련, 이인리 일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진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광장, 도축장)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년 9월 2일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진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광장, 도축장)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광 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6	학천 I.C	교통광장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01-5번지 일원	42,400	증)11,905	54,305	경상북도고시 제288호 ( '01.09.25)	
신설	34	덕성 I.C	교통광장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28번지 일원	-	증)83,455	83,455	-	

나.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26	학천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광장 면적증가</li> <li>· A=42,400→54,305m<sup>2</sup> (증) 11,90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광장 면적 증가</li> </ul>
34	덕성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광장 신설</li> <li>· A = 83,455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광장 신설</li> </ul>

다. 도축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도축장	북구 흥해읍 이인리 684-1번지 일원	27,501	감) 1,081	26,420	포항시고시 제552호 (01.11.29)	

라. 도축장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도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축장 면적감소</li> <li>· A=27,501→26,420m<sup>2</sup> (감) 1,081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연화I.C 면적증가에 따른 도축장 면적감소</li> </ul>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계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4.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고시 제2010 - 75호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0. 9. .

- 1. 사업의 명칭 : 포항 상도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 택지의 안정적 공급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북 포항시 상도동 466-4번지 일원.
  - 면 적 : 84,514 m<sup>2</sup>
- 4. 사업시행자 : 상도지구 도시개발조합장

- 5.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3년간
- 6. 시행방법 : 환지방식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4)
- 9.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수도법 제17조,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농어촌 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상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⑩	경상북도 포항시 상도동 466-6번지 일원	84,514	-	84,514	상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2008,5)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1-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4,514	-	84,514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84,514	-	84,514	100.0	

1-1-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없음

1-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2-1. 교통시설

1-2-1-1. 도로

① 도로총괄표

구분	기능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비고
계	-	-	4	821	13,091	
중로	-	-	3	765	12,941	
	1류	보조간선도로	1	388	8,238	
	3류	집산도로	2	377	4,703	
소로	-	-	1	56	150	
	3류	특수도로	1	56	150	

② 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1	20	보 조 간선도로	388	광로3-4	대로2-2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1	12	집산도로	209	대로2-2	중로1-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2	12	집산도로	168	중로1-1	광로3-4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3	1	3	특수도로	56	중로3-2	광로3-4	일반도로	-	-	

③ 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 폭원:20m, 연장:38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주진입로 신설</li> </ul>
-	중로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 폭원:12m, 연장:209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부진입로 신설</li> </ul>
-	중로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 폭원:12m, 연장:168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부진입로 신설</li> </ul>
-	소로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선신설 - 폭원:3m, 연장:56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진출차량의 감속 차선 신설</li> </ul>

1-2-1-2.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①	주차장	노 외 주차장	상도동 466-8 일원	-	증)1,825	1,825		

②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신설 - 면적 : 1,8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li> </ul>

1-2-2. 공간시설

1-2-2-1. 공원

① 총괄표

구 분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생활권 공원	계	-	증)1	1	-	증)2,844	증)2,844	
	소공원	-	-	-	-	-	-	
	어린이공 원	-	증)1	1	-	증)2,844	증)2,844	
	근린공원	-	-	-	-	-	-	

② 공원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 원	어린이 공 원	상도동 455-174 일원	-	증)2,844	2,844		

③ 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 신설 - 면적 : 2,84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li> </ul>

1-2-2-2. 녹지

①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 지	완충 녹지	상도동 455-107일 원	-	증)3,569	3,569		
신설	①	녹 지	경관 녹지	상도동 466-3일원	-	증)414	414		

②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완충녹지	■ 녹지 신설 - 면적 : 3,569㎡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①	경관녹지	■ 녹지 신설 - 면적 : 414㎡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1-2-3. 유통 및 공급시설

1-2-3-1. 유통업무설비

①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유통업무 설비	대규모 점포	상도동 472-1 일원	-	증)22,356	22,356		

② 유통업무설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통업무 설비	■ 유통업무설비 신설 - 면적 : 22,356㎡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치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

1-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2-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2-1-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BL1	7,164	-	7,164	■ 환지계획에 따라 개별 획지의 규모를 결정

2-1-2.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BL2	19,249	-	19,249	■ 분할 불가

2-1-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BL3	7,574	-	7,574	■ 환지계획에 따라 개별 획지의 규모를 결정

2-1-4.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	계	24,181	-	24,181	■ 분할 불가, 조건부 합병 가능
	BL4	1,825	-	1,825	
	BL5	22,356	-	22,356	

2-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조서

2-2-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1 (R <sub>1</sub> ~R <sub>14</sub> )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점포주택</li> <li>■ 허용점포 : (표.2-2) 참조</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단독주택내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가구 주택</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높이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 2층(조건부 3층 가능)</li> <li>■ 다가구주택 : 3층(조건부 4층 가능)</li> <li>■ 점포주택 : 4층</li> </ul>
			최저높이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된 벽면방향은 전면가로 및 각각부 방향에서는 일치해야 함</li> <li>■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방향을 정남(正南)으로 적용</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및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지붕설치</li> <li>- 부대시설높이 2m이하로 제한</li> <li>- 각종설비시설 차폐</li> </ul> </li> <li>■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용도는 지하층·반지하층에 설치금지</li> <li>- 점포주택의 점포는 지하~2층부에 설치 권장</li> </ul> </li> <li>■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주택의 경우 담장 설치 금지, 단 0.8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재질구조는 허용.</li> </ul> </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면은 검은색계통의 벽돌사용 지양</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1.5m 지정</li> </ul>		

2-2-2.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2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li> <li>「주택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부대복리시설</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권장용도	-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0% 이하</li> </ul>	
		높이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층(일조권제한규정 준수, 사선제한규정 준수권장)</li> </ul>
			권장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주출입구변 10층 이하</li> </ul>
			최저높이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탑상형배치구간내 : 동측 인근 단독주택지로부터 통경확보와 주거지 경관 랜드마크 기능 부여를 목적으로 탑상형 아파트의 건축면적비중을 70%이상 권장</li> <li>연도형 저층배치구간내 : 가로활성화 및 경관유지, 단지입구의 위압감 해소를 목적으로 건축물 층수는 10층 이하로 권장하고, 1~2층에 부대복리시설 배치를 권장</li> <li>직각배치구간 : 동측 인근 단독주택지로부터 통경확보와 거주민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직각 배치를 준수</li> <li>통경축확보구간 : 주요 조망요소인 대상지 북측의 철도변 완충녹지축을 향한 시각적 통로와 단지 진입부로서의 개방감 부여를 목적으로 피로티 구조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한 경우 이외에는 건축물 배치를 지양</li> <li>부대복리시설 :가로 활성화 및 커뮤니티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상 위치지점 부근 설치를 권장</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개동 길이 : 16층 이상인 경우 4호조합 이하, 20층인 경우 탑상형 권장, 15층이하인 경우 6호조합이하, 10층이하인 경우 8호조합이하</li> <li>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설치(조형적 옥탑지다인 및 옥상조경시 예외)</li> <li>담장 및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로3-1호선변 :자연소재 투시형 담장(높이1.2m이하)설치</li> <li>계단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li> </ul> </li> <li>피로티 및 외벽 : 시행지침(3-3-1-4~5)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구간 같은 계열 색채를 사용하여 단지 이미지 통일화</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변 : 프라이버시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하여 5m 지정</li> <li>녹지변 : 연속성부여 및 자연친화를 목적으로 최소한도인 3.0m 지정</li> <li>공원변 : 공원이용자들의 시각적 개방 및 쾌적성 도모를 위하여 5.0m 지정</li> </ul>	
		생태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 이상</li> </ul>	

2-2-3.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3 (N <sub>1</sub> ~N <sub>10</sub> )	용도	허용용도 (NU <sub>1</sub> ~NU <sub>17</su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표.2-3) 참조</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U<sub>3</sub>~NU<sub>4</sub>, NU<sub>9</sub>, NU<sub>12</sub>~NU<sub>17</sub></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0% 이하(단, 공개공지 등 제공시 300%까지 완화)</li> <li>완화산정식 및 산정예 : 시행지침(4-2-2) 참조</li> </ul>
			높이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층</li> </ul>
		최저높이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된 벽면방향은 전면가로 및 각각부 방향에서 일치해야 함</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붕 및 옥상 : 각종 설비 차폐를 권장</li> <li>담장 및 셔터 : 담장설치를 금지하며 0.6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및 식수대 설치만 허용,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1/2이상을 투시형 셔터를 사용</li> <li>외벽 및 간판·광고물 : 시행지침(4-3-1-3, 4-3-1-4)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뜻한 색, 무채색, 밝은색을 사용하며, 원색을 지양</li> </ul>
			건축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로3-4호선으로 부터 3m 지정</li> <li>전면 도로(대로2-2호선)경계로 부터 1.5m 지정</li> <li>측면 경관녹지경계로 부터 2m 지정</li> </ul>
				건축지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면도로(중로3-2호선)으로 부터 1.5m 지정</li> </ul>

2-2-4.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4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속용도에 한함)</li> <li>■ 자동차관련시설(건축연면적의 30%이내 범위에서 허용)</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권장용도	-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 이하</li> </ul>
		높이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층</li> </ul>
			최저높이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면은 가로에 면하여 지정 금지</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도로 건너편에서 시각적 차폐</li> </ul> </li> <li>■ 담장 및 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도상에 지정된 구간에 담장 미설치 권장</li> <li>- 담장미설치구간에는 일체의 구조물 설치를 금지 (단, 대지경계표시를 위한 식수대 및 0.6m이하 생울타리만 허용)</li> <li>- 셔터 설치시 건축물 1층 전면은 1/2이상 투시형태를 권장</li> </ul> </li> </ul>
		색 채		-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대지 및 도로 경계로 부터 1.5m 지정</li> </ul>
		생태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이상</li> </ul>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L5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부대편의시설</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근린생활시설</li> </ul>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쇼핑센터</li> </ul>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0% 이하</li> </ul>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0% 이하</li> </ul>
		높이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층(현상설계공모 권장)</li> </ul>	
			최저높이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전면부는 보행자 진출입 안전을 위하여 차량진출입이 허용되는 가로(중로1-1호선)변 이외에 배치</li> <li>가로활성화 및 커뮤니티 개방을 위하여 1층부에는 판매시설이 아닌 공공편의 및 서비스시설 배치를 권장</li> <li>중로3-2호선변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를 설치</li> </ul>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된 건축물은 옥상녹화를 해야 함</li> <li>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등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li> </ul> </li> <li>담장 및 셔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구간에 담장설치를 금지(일체의 구조물 또는 식수대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대지경계표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0.6m 이하의 생울타리 및 식수대 설치만 허용</li> </ul> </li> <li>외벽 및 간판·광고물 : 시행지침(5-3-1-3, 5-3-1-4) 참조</li> </ul>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항 시가지 진입부로서 랜드마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색채를 사용</li> </ul>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적인 보행유지를 위해 중로1-1호선 및 광로3-4호선으로부터 5m 지정</li> <li>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경계선 및 중로3-2호선 으로부터 3m 지정</li> </ul>
				생태면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 이상</li> </ul>

2-3.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표.2-2〉 점포주택의 허용 점포용도 분류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NU <sub>1</sub>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
	NU <sub>2</sub>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NU <sub>3</sub>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원
	NU <sub>4</sub>	■ 탁구장 및 체육도장
	NU <sub>5</sub>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6</sub>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7</sub>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8</sub>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NU <sub>9</sub>	■ 일반음식점, 기원
	NU <sub>10</sub>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NU <sub>11</sub>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NU <sub>12</sub>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3</sub>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4</sub>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5</sub>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NU <sub>16</sub>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동물병원, 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7</sub>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표.2-3〉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 허용용도분류

구 분	건축물의 용도표시	허 용 용 도
제1종 근린생활 시설	NU <sub>1</sub>	■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 기등)등의 소매점
	NU <sub>2</sub>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NU <sub>3</sub>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원
	NU <sub>4</sub>	■ 탁구장 및 체육도장
	NU <sub>5</sub>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검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6</sub>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7</sub>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NU <sub>8</sub>	■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제2종 근린생활 시설	NU <sub>9</sub>	■ 일반음식점, 기원
	NU <sub>10</sub>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NU <sub>11</sub>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NU <sub>12</sub>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3</sub>	■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 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4</sub>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 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5</sub>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 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NU <sub>16</sub>	■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직업훈련 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동물병원, 독서실,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
	NU <sub>17</sub>	■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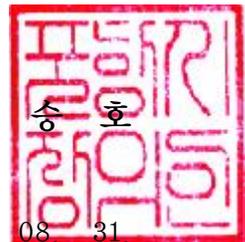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0 - 822호

무단방치차량강제처리(직권폐차)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코자 하오니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강제 폐차함은 물론 차량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 (150만원이하의 범칙금)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포항시장 박



2010. 08. 31.

- 1. 공 고 기 간 : 2010. 08. 31. ~ 2010. 09. 11. (12일간)
- 2. 폐 차 장 소 : 신진폐차장, 포항종합폐차장, 동해지구종합폐차장,  
(주)태경ENG폐차장, 흥해종합폐차장, 태평양종합폐차장(주)  
대원종합폐차장
- 3. 폐차 예정일 : 2010. 09. 24. 이후
- 4.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자 ☎(054)270-3643
-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 6. 강제처리대상차량 : 불임 자동차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참조

자동차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총건수 : 16 ◆ 공고기간 : 2010-08-31에서 2010-09-11까지

관리번호	자동차번호 성명	차명 주민번호	주소	방지장소		이해관계
				방지장소	보관장소	
2010-48	경북1호3726 김남태	세피아 6702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진리 316번지 14/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320 대원종합폐차장		LG카드(주)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79번지단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3카단6429 포항시청교통포항남부경찰서교통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포항시남구청건교,세우포항시북구청건교
2010-49	경기30고7378 김원기	마티즈 (MATIZ) 69113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55번지 1호 5/1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320 대원종합폐차장		수원지방법원99카단1288 수원팔달구청사신수원장안구청사신 수원관선구청사신 안양만안구청건교 수원지방법원99카단30154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99카단81424 군포시청교통 안양동안구청건교 과천시청산경 안산시청교통, 도세 용산구청건교지 국민건강보험공단평창지사장지진부신진구청교통 강남구청교지 평강경찰서교통 광명시청교통 금천구청교지 서울중구청교지 고양시덕양구청산면 서울시청교단, 교계 양주구청지경 성남분당구청건설 서울구로구청교통 양평군청도로,세우 서울관악구청교지 서울영등포구청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양평지사수정 대구시청주차포항시북구청건교
2010-50	경북80가4798 이성훈	포터장축수퍼캠 7209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78번지 3호 2/	포항시북구흥해읍금장리320 대원종합폐차장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0카단308 포항남부경찰서교통 포항시북구청건교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고지포항시남구청환경,사회,세우,주민,
2010-52	경북41라1333 박수미	아반떼오토메틱 7812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42번지-1호	포항시북구흥해읍금장리320 대원종합폐차장		LG카드(주)서울강남구역삼동679번지단지 경주경찰서경교 경주시청세우,교통포항북부경찰서경교포항시북구청건교,세우

2010-53	경북28가4930 판동훈	프라이드베타오 토 6001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 리 278번지 해맞이타운 가동 416호	포항시북구 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세무
2010-54	경북27가3530 황현욱외1(최나현)	프린스2.CMT 6407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5 번지 4호 8/4 선린사택 107호	포항시북구 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포항시정교행, 환위 포항남부경찰서교통 국민 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지정 포항시남구청세 무 포항북부경찰서경교 포항시북구청세무, 건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부산북구청주관
2010-56	대구80다6380 윤주혁	포티슈퍼캠 4502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123- 6	포항시북구 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대구북구청환경, 지교, 세무
2010-57	진남29가6312 이형준	세피아 730309-*****	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24번지	포항시북구 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여수경찰서경비 여수시청차량, 교행, 세무, 치등 여수중부민안전출장소민원
2010-58	경북81노7488 (주)영진건설	봉고프린티어 176011-*****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150번지 51호 중앙상가 204 (자가용사용신 고)	포항시북구 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구미시청환보, 세무 구미경찰서경교 영천시청 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구미지사지정 구미차량 등록사업소차량
2010-59	경북28리3673 (주)성우주주택	마티즈 506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 리 1188-242	포항시북구 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포항세무서장세 포항시청교행, 환위 국민건강 보험공단차등 포항시남구청세무, 사환, 건교 대 구지방법원2000카단32701 근로복지공단포항지 사지수 포항남부경찰서교통 포항시차량등록사 업소차등 포항시북구청건교 부산강서구청도교
2010-60	경북27다8179 대광종합정비(주)	엑센트 1717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 리 275번지 6호	포항시북구 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포항시정교행 포항남부경찰서교통 포항시북구 청건교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국민건강보 험공단포항남부지사지정 국민연금관리공단포항 지사직교 포항시남구청세무

2010-61	경북3무6169 (주)대덕상운	프린스2.0AT 1746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 리 757번지 3호	포항시북구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차등 포항시남구청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포항남부지사지정 근로복지공 단장수
2010-62	0 박세활(합동상사)	쏘나타II12.0LPG 690302-*****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2가 11-2번 지201호	포항시북구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경산시청세무
2010-63	47어1178  (주)킬자동차매매상 사	그랜저XG  28491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593 번지 3호	포항시북구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삼성캐피탈(주)서울중구태평로2가150번지단지 노원경찰서교통 노원구청교지 송파구청교통 남 양주시청교통 성북구청교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진수 서울시청 시설관리공단주계 강북 구청교지 파주시청도교,시세 파주경찰서경교 파주시차량등록교정 성동구청교지 서울중구청 교지 강남구청교지 관진구청교지 서초구청주관 파주시차량사업소차사 성남분당구청경교 서울 시청도행,교지 원미구청경교 포항시북구청건교
2010-64	21우4451 홍순석(한주상사)	EF쏘나타LPG 740821-*****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1가 16번지 2호 98-13	포항시북구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대구북구청교통 대구서부경찰서경교 대구북구 청세무, 환관 포항시북구청건교
2010-65	21우4478 홍순석(한주상사)	옵티마 740821-*****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동1가 16번 지 2호 98-13	포항시북구흥해읍금장리 320 대원종합폐차장	대구수성경찰서교통 대구서부경찰서경교 부산 기장군청교지 대구동구청교통 대구북구청세무, 환관, 교통 포항시북구청건교 포항시남구청건교